

수원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667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종길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26.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24. 선고 2018가단117812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2. 27.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7. 12. 27. 접수

제1637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인격 부인 관련 주장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D 사이에는 그 법인격의 동일성이 있는바, D가 2017.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행위’라 한다) 이전에 이미 원고들의 H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사해의사 관련 주장

피고를 포함한 D의 일부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기 위한 목적으로 H 및 D와 통모하여, D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법인격 부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H과 D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행위 당시에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를 포함한 D의 일부 채권자들이 D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금원의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행위로 인하여 D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2) 사해의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아가 피고의 사해의사의 존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사해행위 취소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 이지형, 판사 최호열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의왕시 G 임야 39255㎡의 공유지분 1/2. 끝.